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5 선고 2022가합1032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이호철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은 379,000,916원 및 그 중 235,862,069원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C는 353,724,258원 및 그 중 220,137,931원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를 인도하고, 위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일 때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개당 2,505,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를 인도하고, 위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개당 2,505,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고 한다) 145대(피고 B 75대, 피고 C 70대)를 1대당 400만 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채굴기의 가동에 필요한 설치 및 안정화를 행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굴기 매매 및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3. 및 2017. 6. 28. 이 사건 채굴기 매매대금으로 원고 B으로부터 3억 원(= 400만 원 × 75대)을, 원고 C로부터 2억 8,000만 원(= 400만 원 × 70대)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굴기 145대(= 피고 B 75대 + 피고 C 70대) 중 31대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2. 8.경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굴기 매매대금을 2018. 2. 1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9.부터 2018. 2. 20.까지 3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1억 2,400만 원을 환불해주었다.

바. 이 사건 채굴기 114대(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145대 - 공급하지 못한 31대)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가 밀봉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사. 피고들은 2018. 5. 28.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3388사건으로 이 사건 채굴기 매매대금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 29. ‘원고는 피고 B에게 235,862,069원, 피고 C에게 220,137,9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2. 11.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20나51177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채굴기의 운영을 통해서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약 280개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이더리움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를 인도하여야 하고, 위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개당 2,505,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조정절차 등에서 이더리움 반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들의 이더리움 반환의무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선행판결 중 이더리움 반환의무에 관한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이더리움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피고들이 채굴한 이더리움의 가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관리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기의 운영으로 이미 채굴한 이더리움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3) 피고들에게 이더리움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더리움 시세가 급등하자 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바, 대상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한다.

4) 피고들에게 이더리움 반환에 갈음하는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5)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의 이더리움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채굴기의 운영을 통해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약 280개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굴기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이더리움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피고들도 원고에게 위 이더리움을 반환하여야 함을 지적해 둔다(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 등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주문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21. 1. 3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은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사실상 일치함에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더리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출한 2018. 8. 7.자 답변서에는 ‘① 원고는 채굴기 114대를 공급하고 이를 가동 중에 있어 채굴기 1대당 이더리움 화폐를 1.5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 12. 7.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까지 피고들이 288개의 이더리움 화폐를 가져갔는데, 이를 국내거래소 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여 위 1억 6,000만 원은 이미 자신의 이익금으로 귀속된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채굴기는 원고의 것이고, 그 이익은 피고들이 취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②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채굴기로부터 생산된 이더리움 288개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출한 2018. 11. 22.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는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피고들과 원만히 조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구매대금의 반환과 함께 피고들이 채굴한 이더리움 및 수익의 반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약 140개의 이더리움을 얻었으며, 이 중 일부를 환가하여 29,00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원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11,307,000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현금화한 수익은 17,693,000원에 불과합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약

140개의 이더리움을 얻었으나 이 중 단 1개도 현금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중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4억 5,600만 원의 반환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원고가 원한다면 피고들이 받은 이더리움(약 280개)를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들은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명시적으로 ‘피고들이 받은 이더리움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힌바, 그 의사표시가 조정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기에서 채굴한 이더리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피고들이 채굴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관리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관리비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다. 피고들의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C가 약 140개의 이더리움 중 일부를 환가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11,30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이 채굴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관리비 총액을 크게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굴기에서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 합계 288개를 채굴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492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금전채권인

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이더리움의 인도청구권이므로, 위 각 채권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채권인 대상청구권은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판결 선고 이후 장래(강제집행 시)에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더리움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9. 4. 29.경 피고 B은 569,002원, 피고 C는 540,998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이자, 원본 순으로 법정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23. 2. 27. 기준, 피고 B은 원금 235,862,069원, 이자 잔액 143,138,847원, 합계 379,000,916원, 피고 C는 원금 220,137,931원, 이자 잔액 133,586,327원, 합계 353,724,25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은 379,000,916원 및 그 중 235,862,069원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C는 353,724,258원 및 그 중 220,137,931원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144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른 이더리움 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5. 4. 무렵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가 이더리움 1개당 2,509,00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들은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더리움 1개당 2,505,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더리움 시세가 급등함을 기회로 이 사건 판결금 지급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대상금액은 이 사건 합의해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고, 본래적 급부의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여부는 판결 선고 이후 장래(강제집행 시)에 비로소 확정되는바, 대상금액은 강제집행 시의 가액에 가장 근접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상금액을 이 사건 합의해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들은 이더리움의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를 하면서 이더리움 1개당 시가에 따른 비율로 환산한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 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의 이행지체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김은수, 판사 정수호

1) 원고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인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금전 지급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예비적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 단순병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 207686, 207693 판결 등 참조), 이더리움 암호화폐 인도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로서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